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843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경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9. 27.

다. 회 부 일 : 2023.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8조의5 및 제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Ⅲ. 검토의견

1.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u>1천만원</u> 이하의 출자금 ○ 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이후 1년간('26. 1. 1. ~ 12. 31.)은 5%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27. 1. 1. ~)에는 9% 분리과세 함 * 2022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기한 연장	☐ 비과세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1명당 <u>3천만원</u> 이하의 출자금 ○ 세율: (현행과 같음)

☐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등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에 200만원을 한도로 신설된 후 1987년 500만원, 1992년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적용기한이 연장¹⁾되었음.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연혁]

구 분	1976년	1978년	1987년	1991년	1992년	2009년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또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²⁾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참고로 동 조세특례와 관련된 상호금융기관 별 2021년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음.

- 1) 참고로 동 조세특례와 유사하게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따른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운영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1명당 예탁금 “3,000만원”을 한도(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 상향)로 운영되고 있음.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년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출자배당	1인당 평균	이용고배당	1인당 평균
농협	20,845,886	365,128	0.0175	473,745	0.0227
수협	120,216	14,764	0.1228	15,560	0.1294
산림조합	813,539	9,941	0.0122	3,291	0.0040
신협	6,744,341	97,271	0.014	5,777	0.001
새마을금고	7,487,620	202,377	0.027	29,430	0.004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3,724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2023년에는 4,987억원, 2024년에는 5,216억원의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저축지원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금액	5,859	4,863	3,760	3,724	4,987	5,216

* 조특법 제88조의5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제89조의3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한도를 상향하면 도·농간 소득격차의 축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³⁾.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17년	38,239	67.6	49,016	82.3	34,590	58.1	59,558
2018년	42,066	64.9	51,836	80.0	36,476	56.3	64,795
2019년	41,182	62.4	48,415	73.4	37,499	56.9	65,960
2020년	45,029	65.5	53,187	77.3	37,105	53.9	68,788
2021년	47,759	64.5	52,392	70.8	38,133	51.5	74,029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08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말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경제조사”)

참고로 2022년 실시된 동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동 조세특례가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분석된 바 있음.

둘째, 동 제도의 확대를 통해 상호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3)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3/4정도가 저소득층에 주어지고 있고,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된 바 있음.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 (비과세 출자금)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인원 비율 : 75.1%,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에서 2천만원 이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75.7%로 나타남.

2022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이유로 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조합원 비율이 약 70% 이상이고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출자자가 많아졌다는 인식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이유로 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단위: %, 명, 점)

구 분	응답비율					응답자 수	평균
	1	2	3	4	5		
농협	0.0	1.7	20.3	55.0	23.0	300	4.0
신협	0.0	4.6	24.3	57.2	13.8	152	3.8
새마을금고	0.0	3.3	21.2	57.0	18.5	151	3.9

* “조합 가입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에서 5로 갈수록 긍정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제도에 따른 출자자가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점)

구 분	응답비율					응답자 수	평균
	1	2	3	4	5		
농협	0.0	5.3	22.0	58.0	14.7	300	3.8
신협	0.0	2.6	19.7	62.5	15.1	152	3.9
새마을금고	0.0	4.6	20.5	58.3	16.6	151	3.9

*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에서 5로 갈수록 긍정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비과세 출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면 농어민의 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한 보다 큰 출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상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셋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되어 물가상승 등의 경제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2년 44.685, 2022년 107.710으로 약 2.4배로 증가⁴⁾하였음.

□ 다만, 개정안의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실제 조합 등 출자자의 상당수는 비과세 한도액인 1,000만원과 무관한 소액 출자자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대액은 약 1억원 내외이지만 중간값은 농협이 100만원, 신협이 25만원, 새마을금고가 20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이고,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비중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10% 수준으로 조사⁵⁾되었음.

4)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5)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조사에 따른 출자금 가입금액]

(단위: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농 협	666.6	1,582.7	1	100	15,000
신 협	617.9	1,614.3	1	25	12,000
새마을금고	444.3	1,008.4	1	20	9,000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둘째,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동 조세특례 실적이 300억원을 초과⁶⁾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⁷⁾이 될 정도로 조세특례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조세특례의 출자금은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면 출자자의 자산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3,724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2023년에는 4,987억원, 2024년에는 5,216억원의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임.

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155

2.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제116조) ○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1억원 한도) - 농협 등이 작성하는 예·적금증서와 통장 -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 등에 관한 증서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관련 서류 - 농지조성사업 관련서류 등 ○ 적용기한 - <u>2023.12.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6.12.31.(김수홍의원안, 조해진의 원안, 안호영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정부안)</u> - <u>2027.12.31.(김형동의원안)</u> - <u>2028.12.31.(배준영의원안)</u>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서류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8)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도를 도입⁹⁾하고 있음.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1970년 도입되었음. 제도 신설 당시에는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 등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가 시행되었고, 예금·적금증서, 통장,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서류는 1974년부터,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및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는 1982년부터, 창업기업이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1997년부터 인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지세 면제 특례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른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제5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단,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 합계액 1억원 이내 한정)	2023.12.31.
제6호	어린이예금통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사업과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호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1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9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24.12.31.
제3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위에 적시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의 다른 호는 현재 모두 삭제된 상황임.

인지세 면제 금액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5호, 제19호),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증서(제7호),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의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이며,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제6호)에 대해서는 100원의 인지세

가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구 분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1억원 이하) 관련 증서(제5호)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 과세문서로서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2만원
·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관련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제7호)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등 관련 서류(제9호)	5,000만원~1억원	7만원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1억원~10억원	15만원	
· 창업자가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10억원~	35만원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제6호)	(해당사항 없음)	100원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및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동 조세특례는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 일몰이 종료하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김수홍의원안, 조해진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정부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3년, 김형동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로 4년, 배준영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첫째,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

산비·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시근로자의 60~70%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농어업인의 세부담 경감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1년·2022년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어가 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함

* 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둘째, 동 조세특례는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동 조세특례를 유지할 경우 농어민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 실적은 2017년 26억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 92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94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2023년에는 96억원, 2024년에는 102억원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조세특례 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26억원	77억원	81억원	92억원	116억원	94억원	96억원	102억원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셋째, 동 조세특례는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바, ① 농어민의 소득향상, 서민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정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②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조세특례에 따른 지원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동 제도의 구조적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③ 대농 및 부농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타 세제지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유사중복성 문제가 적다는 점에서 이를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는 평가결과가 제출된바 있음¹⁰⁾.

□ 다만, 조세지출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¹¹⁾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¹²⁾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국세감면액(A)	529,357	570,248	635,484	694,988	771,144
국세수입총액(B)	3,036,717	3,639,730	4,229,237	4,286,370	3,949,465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3.9	16.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0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0)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세(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9.)

1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2) 2.3%p

□ 또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3. 창업기업 용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창업기업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제116조) ☐ 면제대상 - 창업기업 창업 2년 이내 용자 관련 서류 ☐ 적용기한 - <u>2023.12.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4.12.31.(조정식의원안)</u> - <u>2026.12.31.(김수홍의원안, 조해진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정부안)</u> - <u>2027.12.31.(김형동의원안)</u> - <u>2028.12.31.(배준영의원안)</u>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¹³⁾,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¹⁴⁾하고 있음.

13)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 인지세 면제 금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까지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1,000만원 ~ 3,000만원	2만원	*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2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4만원	
5,000만원 ~ 1억원	7만원	
1억원 ~ 10억원	15만원	
10억원 ~	35만원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및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동 조세특례는 1997년 최초로 도입되어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며,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조정식의원안, 김수홍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조해진의원안, 진선미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정부안은 일몰이 종료하는 창업기업을 위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첫째, 동 조세특례 실적이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창업 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매년 2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창업기업들의 인지세 부담을 감면함으로써
원활한 용자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조세특례 실적]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5억원	4억원	6억원	6억원	7억원	9억원	9억원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창업 시 소요자금 조달방법 응답비율(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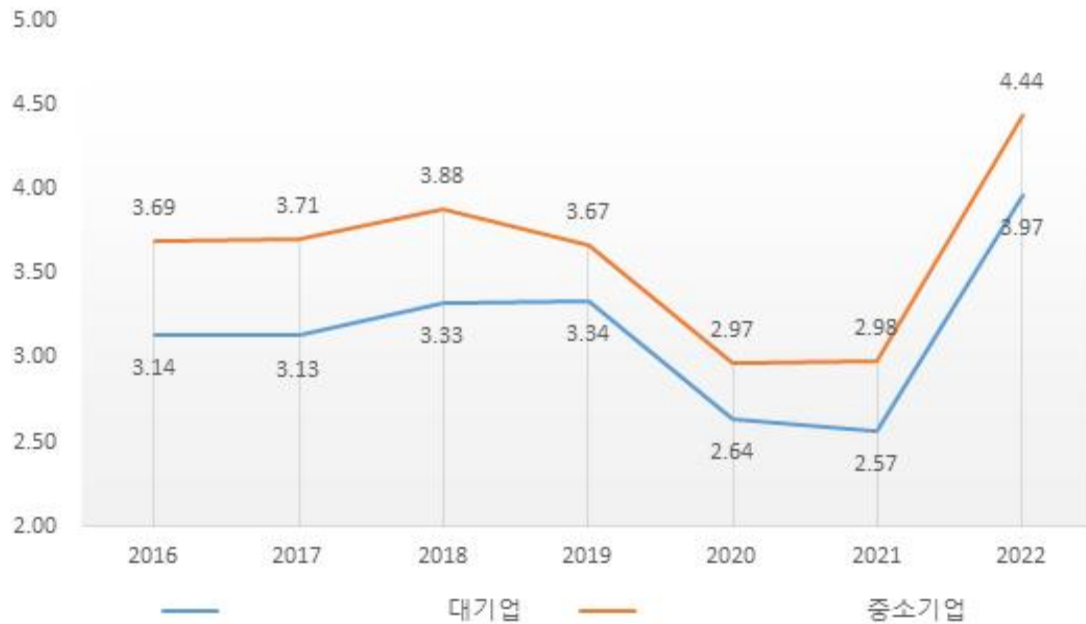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기자금	94.5	94.0	93.3	93.8
은행·비은행 대출	20.9	21.8	24.6	26.2
개인간 차용	14.2	14.9	14.5	16.3
정부 융자·보증	2.5	2.4	2.4	3.3
정부 출연금·보조금	1.2	1.5	1.5	1.8
엔젤, 벤처캐피탈 투자	0.7	0.8	0.7	1.0

* 자료: 국가통계포털, 창업기업실태조사

둘째, 창업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담보
력이 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
안할 때,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초기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실행금리]

(단위: %)



□ 다만, 조세지출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¹⁵⁾에 따른 범정한도를 초과할 것¹⁶⁾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망)	2024년 (전 망)
국세감면액(A)	529,357	570,248	635,484	694,988	771,144
국세수입총액(B)	3,036,717	3,639,730	4,229,237	4,286,370	3,949,465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3.9	16.3
국세감면율 범정 한도	13.6	14.3	14.6	14.3	14.0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5) 국세감면율 범정 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6) 2.3%p

□ 또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년 정기회에서는 당초 2021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